

보도시점 2026. 7. 22.(수) 12:00 / 배포 2026. 7. 22.(수) 08:30
< 7. 23.(목) 조간 >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광고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제재

- 광고실시 전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이하 ‘넥스큐브코퍼레이션’)가 광고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학습계획 상담, 학습공간 제공 및 관리, 개별지도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 영위

가맹사업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광고 사전동의제)

그러나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실시하고자 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의를 계산을 자의적인 방식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광고 소요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던 방식 대신에 광고의 효과에 비례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초기에는 참여 희망자만 대상으로 이러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을 적용하다가 2022년 11월에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가맹점주들의 동의 의사를 얻는 과정에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의 효과로 등록하는 학생 1인당 일정 금액 단가를 부과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어떤 광고 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인지와 어떤 광고

내용에 그 단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동의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동의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범위반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2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후 각 유형이 획득한 찬성표를 합산하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동의율을 계산하기도 하였다.

- * ① 광고 효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11만 원씩을 부과하는 방안
- ② 광고 효과에 따라 등록한 신규 학생만을 대상으로 22만 원씩을 부과하는 방안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이러한 범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악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광고 사전동의제가 2022. 1. 4.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 가맹본부가 광고의 비용 부담에 대하여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가맹점주가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광고 내용별 비용의 규모, 부담의 정도 등 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가맹점주의 동의 비율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광고나 판촉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다.

<붙임>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담당 부서	가맹유통심의관 가맹거래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득규 (044-200-5102)
		담당자	조사관	원지은 (044-200-5106)

1

법 위반 내용

가. 행위사실

-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2. 11. 1.부터 2023.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하였다.
- 또한, 2022년 10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¹⁾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광고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²⁾에 동의한 비율이 각각 50% 미만³⁾임에도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산하여 50%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하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하였다.
 - 1)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정한 광고비용 분담 방식으로 광고 실시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에 신규 등록하는 학생 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광고분담금 단가)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
 - 2) 첫 번째(A안)는 가맹본부의 광고를 통하여 신규 등록하였는지 구분하지 않고 신규 등록하는 학생당 11만 원(VAT 포함)씩을 분담하는 방식, 두 번째(B안)는 가맹본부의 광고를 통해 신규 등록된 경우에만 학생당 22만 원(VAT 포함)씩을 분담하는 방식
 - 3) 전체 166개 가맹점사업자 중 A안에 동의한 비율은 47.0%이고 B안에 동의한 비율은 11.4%임

나.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할 수 있다.
 - 이때, 광고로 인해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게 될 광고별 비용의 규모, 부담의 정도 등을 이해하고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그러나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주로부터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광고분담금의 산정 방식 중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단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분담의 대상이 되는 광고비용의 범위도 불분명하게 제시하였는바,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또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성격이 상이한 다른 2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여 각 유형에 대해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각 유형의 찬성표를 단순 합산하여 동의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가맹점주의 동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위 행위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기 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2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법조)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 (조치내용)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의의 ·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에 광고 사전동의제가 2022. 1. 4.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제재한 범위반 사례임
- 특히, 가맹본부가 광고의 비용 부담에 대하여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가맹점주가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광고 내용별 비용의 규모, 부담의 정도 등 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가맹점주의 동의 비율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그 비용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다.

[참고]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

참고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

1. 가맹본부 일반현황

□ 가맹사업 현황

설립일	가맹사업 현황			
	영업표지	가맹사업 개시일	업종	직영점/가맹점 수
2003. 12. 10.	에듀플렉스 에듀코치	2004. 1. 1.	교육서비스업 (학습지도)	15/197

* 출처 :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정보공개서(2024. 12. 31. 기준)

□ 매출액 등 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12,063	5,832	20,967	835	841
2023	12,063	5,832	20,967	835	841
2024	13,306	6,319	20,071	826	757

* 출처 :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정보공개서(2024. 12. 31. 기준)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비율 및 부담 한도